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
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(안)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2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 대금 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함.(안 제2조)
- 나.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시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함.(안 제4조)
- 라. 잉여금의 처리, 예비비 및 일반회계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- 나. 비용추계서

#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”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·서구, 김포시 양촌면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세입)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「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을 세입으로 한다.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
2.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<p>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</p> <p>○ 제21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(出捐金)</li> <li>2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</li> <li>3. 제8조에 따른 가산금</li> <li>4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</li> <li>5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·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</li> </o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업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○ 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, 지원기준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### 가. 조례안 제4조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

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
-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

## 2. 비용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규정에서 정한 지원내용
- 연도별 서울시 자금 이전 비용 및 사업대상지역(계양구, 서구, 김포시 양촌면 일부) 자차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중 심사 기준에 의해 채택된 사업

### 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억원)

계	2014년	2015년	2016년	비 고
1,025	538	338	149	

※ 2013년도에 전입된 200억은 조례 시행 후 2014년도 분에 합해서 집행 예정이며,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2016년도에 사업 종료 예정임.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서울시 이전금 100%

## 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## 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과장 심영배

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13년도 (1차분)	2014년도 (2차분)	2015년도 (3차분)	2016년도 (4차분)	계
세입	환경개선자금 (서울시 이전금)	20,000,000	33,800,000	33,800,000	14,900,000	102,500,000
	소계	20,000,000	33,800,000	33,800,000	14,900,000	102,500,000
세출	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사업		53,800,000	33,800,000	14,900,000	102,500,000
	소계		53,800,000	33,800,000	14,900,000	102,500,000
재원 조달		20,000,000	33,800,000	33,800,000	14,900,000	102,500,000
국 비						
시비	소 계					
	일반회계					
	특별회계					
	기 금					
군·구비						
민 간						
기 타 (서울시 이전금)		20,000,000	33,800,000	33,800,000	14,900,000	102,500,000